

■ 최신 법령 ■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

1. 개정 이유

중앙행정기관의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중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효율화 및 중복 방지를 위한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, 고용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관리·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2. 주요 내용

- 가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,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(제13조제2항 신설).
- 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·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(제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).
- 다.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구인·구직 지원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,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계기관·단체 등

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·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(제15조의4 신설).

3. 다운로드 : [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\(2019. 6. 11. 시행\)](#)